

결 정

2018 - 2033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3.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4.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5.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6.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주 문

일간스포츠 2018년 2월 1일자 10면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2월 2일자 A28면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3일자 A8면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2월 22일자 8면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2월 23일자 14면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2월 23일자 2면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6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대흑천’은 좋은 기운과 재물 복을 불러 들여서 사람의 운명에 재물 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고, 좋은 운명을 끌어들이고 액운을 막아준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 대흑천을 선물 받고 힘든 상황을 극복한 50대의 체험사례를 실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흑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